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7] <신설 2026. 2. 11.>

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| 관세율표<br>번호 |    | 품명  | 규격 등                    | 세율<br>(%) | 한계수량     |
|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호          | 소호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0803       |    | 바나나[플랜틴(plantain)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0803       | 90 | 기타  |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           | 5         | 129,000톤 |
| 0804       |    | 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0804       | 30 | 파인애플  |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           | 5         | 33,500톤  |
| 0804       | 50 | 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   | 망고(mango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 | 5         | 18,500톤  |